

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-375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 . 9 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동두천경찰서가 개서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우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또한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일부 명칭 변경(안 제3조제3항)

- 양주경찰서장 ⇒ 관할지역 경찰서장
- 동두천양주교육장 ⇒ 관할지역 교육장

나.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일부 명칭변경(안 제6조제1항)

- 총무과장 ⇒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
- 재난관리과장 ⇒ 민방위업무 담당과장
- 관할지역 경찰서 경비과장 ⇒ 관할지역 경찰서의 작전 및 운용업무 담당과장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6호 중 “양주경찰서장”을 “관할지역 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제7호 중 “동두천양주교육장”을 “관할지역 교육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재난관리과장”을 “민방위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5호 중 “관할지역 경찰서 경비과장”을 “관할지역 경찰서의 작전 및 운용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행정민원담당이”를 “통합방위업무 담당자가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양주경찰서”를 “관할지역 경찰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총 무 과
입 안	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홍 현 섭
	담당 직위·성명	총무담당 류 범 상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한 영 수 860-2112